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6. 10 선고 2018가합354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피 고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동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덕기

3. E

4. 주식회사 F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21.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7. 4. 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 및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 E 사이에 2017. 4. 6.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신탁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12. 접수 제11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16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12. 접수 제113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12. 접수 제11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2017. 5. 10.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 계약은 349,808,21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349,808,219원 및 그중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5.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H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H의 아들로써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 나. 피고 E 등의 빌라 신축사업 및 상호합의서 작성

1) 피고 E과 I은 2014. 3.경 안동시 J 임야 8,331㎡(이하 'J 토지'라 한다) 및 K 임야 1,201㎡(이하 'K 토지'라고 한다)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동 총 32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2) J 토지에는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K 토지에는 L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 E은 2014. 4. 4. L의 남편인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호합의서(이하 '이 사건 상호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회사 대표 E이라고 기재하였다.

1. 2014년 J 토지 외 2필지 빌라 사업의 가등기권 명의변경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의 조건으로 일금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을 입금하고, M동 동쪽 4층(일금: 분양가격 책정 2억 5,000만 원 기준)을 근저당권이나 세금 외 등 일체 없는 형태로 지급(지급시기: 2015. 6. 28.)하기로 한다.

2. 2014년 J 토지 외 2필지 빌라 사업의 가등기권 명의변경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빌라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싱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장 외 기구공사 등은 시공사에서 도급 내역 금액과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시공사, 시행사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책임을 지고 원고 외 1인에게 발주하기로 한다.

3. 2014년 J 토지의 2필지의 가등기 명의변경(명의변경자: 피고 E)을 하기로 한다.

지급방법: 1차 -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2014. 4. 4.

2차 - 오천만 원(₩50,000,000) 2014. 4. 15.

3차 -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2014. 5. 30.

(J 토지 은행대출 발생 시) 입금하기로 한다.

상호 간에 성실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 K 토지의 은행대출 이후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 추가 설정은 일억 원(₩100,000,000)을 하기로 하고 약속 이행 시(준공 시) 해제하기로 한다.

3) 피고 E은 2014. 4. 4.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액면금 각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 E은 위 3장의 약속어음 중 액면금 각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하여, 2014. 4. 23.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30. 액면금 각 5,000만 원,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호합의서에서 정한 3억 5,000만 원의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 등의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15년경 안동시 N 임야 1,293㎡ 등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다세대주택인 'O' 4동(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안동시 N 임야 1,293㎡ 등 4필지에 관하여, 피고 E은 K 토지 등 5필지(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15. 7. 24. 피고 신탁회사와 1순위 우선수익자가 P조합(이하 'P'이라 한다)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당시 P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회사, 피고 E은 2016. 7.경 피고 신탁회사와 위 2015. 7. 24.자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Q조합(이하 'Q'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Q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회사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17. 4. 6. 피고 신탁회사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 변제 완료시까지’로, 우선수익자를 R조합로, 우선수익한도금액을 689,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피고 E은 2017. 4. 6. 피고 신탁회사와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로, 우선수익자를 S조합로, 우선수익한도금액을 49억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하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2017. 4. 12. 피고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청구취지 제1의 나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피고 E은 2017. 4. 12. R조합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S조합로부터 3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4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대출금채무 및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S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출금 등 사용내역

| 날짜           | 출금액(원)        | 사용내역                                       |
|--------------|---------------|--------------------------------------------|
| 2017. 4. 12. | 3,255,140,278 | P 및 Q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                         |
| 2017. 4. 12. | 4,908,830     | 지방세(취득세) 납부                                |
| 2017. 4. 12. | 4,740,430     | 지방세(취득세) 납부                                |
| 2017. 4. 12. | 124,497,460   | 등기비용 등                                     |
| 2017. 4. 13. | 500,000,000   |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공사대금채무 변제              |
| 2017. 4. 13. | 137,947,942   | T 공사대금채무 변제                                |
| 2017. 4. 13. | 100,000,000   | E에게 지급[그중 일부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공사대금채무 변제] |
| 합계           | 4,127,234,940 |                                            |

[인정근거] ○ 피고 신탁회사, D, 피고 회사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자백간주

##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E,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M동 동쪽 4층 부분을 이전해 주지 않는 경우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약정금 합계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E를 상대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보전채권이 있었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위 피고들의 책임재산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신탁회사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 E를 상대로 3억 2,000만 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있었다. 무자력 상태에 있던 피고 E은 2017. 5. 10. 피고 D와 별지3 목록 기재 토지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E의 책임재산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D는 2019. 12. 17. V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채권액 349,808,219원(= 위 3억 2,000만 원 + 2015. 6. 29.부터 2017. 5. 9.까지의 이자 29,808,219원)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349,808,219원 및 그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위 제2의 가.항과 같다.

####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은 2018. 12. 14.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청구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 피고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

###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채권 및 약정금채권의 존부

#####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E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 및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E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발주하지 않아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호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거기에 “이 사건 빌라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싱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장 외 기구공사 등은 시공사에서 도급 내역 금액과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시공사, 시행사와 원고가 상호 합의하여 책임을 지고 원고 외 1인에게 발주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빌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발주는 시공사, 시행사, 원고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② 또한 피고 E 및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이 사건 상호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2015. 6. 28.까지 이 사건 빌라 M동 동쪽 4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위 부분의 예정 분양가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호합의서에 “2014년 J 토지 외 2필지 빌라 사업의 가등기권 명의변경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의 조건으로 (중략) M동 동쪽 4층(일금: 분양가격 책정 2억 5,000만 원 기준)을 근저당권이나 세금 외 등 일체 없는 형태로 지급(지급시기: 2015. 6. 28.)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E이 원고에게 분양가액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에게 금전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존부

원고에게 피고 회사나 피고 E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 및 약정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존부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P, Q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위 P, Q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

②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피고 신탁회사와 이 사건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토지 지상의 건축물(신탁계약 이전 또는 이후에 위 피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 모든 지상 건축물 포함)을 신탁부동산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위 피고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에 대하여도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토지담보신탁계약 제19조 제1항, 제3항).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담보신탁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약정의 이행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 E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 만족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R조합, S조합)가 이 사건 토지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P, Q)와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대출기관이 종전 P, Q에서 R조합, S조합로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S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이 사건 토지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P,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 건물 신축 관련 비용, 신규 대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신탁회사에게 이전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담보신탁계약 및 각 신탁계약은 부동산등기부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 신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어 피고 회사와 피고 E의 채권자들도 위 각 계약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

⑥ 한편,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W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중 별지1 목록 순번 7, 8, 1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9.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나324556), 이후 W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69169).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E를 상대로 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이승엽, 판사 김준영

## 별지1

## 1.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2.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3.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4.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5.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6.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7.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8.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9.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10.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11.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12.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13.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14.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15.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 16.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1293㎡

경상북도 안동시  대 1304㎡

경상북도 안동시  전 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54분의 165.8750

2025. 12. 15. 14:00:00

## 별지2

## 1.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2.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3.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4.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5.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6.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7.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8.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9.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10.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11.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12.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13.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 14.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15.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16.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대 399㎡

경상북도 안동시  대 22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0.4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686분의 167.8750

별지3

안동시 X 입야 4750㎡. 끝.

